



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점



01 안전망



동물학대



유실·유기 예방



농장동물



실험동물



국가 봉사동물

현재

- ▶ 피학대동물 격리조치 후 소유자에 반환
- ▶ 유기 시 300만원 이하 벌금
- ▶ 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 외 일반농장을 위한 동물복지기준 부재
- ▶ 실험동물 고통 감소를 위한 신규 시험법에 대한 체계적 교육 미흡
- ▶ 운용기관별 관리기준 상이

개선

- ▶ 사육금지제도 도입으로 학대 사전 예방
- ▶ 유기 시 500만원 이하 벌금
- ▶ 일반농장 시설·관리 등 동물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
- ▶ 3R 원칙을 따른 맞춤형 컨설팅·교육으로 윤리성 제고 * 개선(Refinement), 감소(Reduction), 대체(Replacement)
- ▶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
- ▶ 은퇴 후 통합관리

02 인프라



동물등록



동물보호센터



민간보호시설

- ▶ '반려견'에만 등록의무 * 생산업 부모견, 특수목적견 등은 제외
- ▶ 지역주민에게 기피시설로 인식
- ▶ 신고제 이행이 곤란한 시설이 다수

- ▶ 모든 '개'를 등록하되, 방식을 다양화하여 동물등록 활성화
- ▶ 주민친화적 시설 조성 및 민간의 운영 참여 확대로 지역사회 기여
- ▶ 컨설팅·정책자금 등 운영 정상화 지원

03 문화



민관협력



교육



개식용 종식



안전관리

- ▶ 현안에 따른 의견수렴 위주 참여
- ▶ 유·초등학교 동물복지 인식 교육
- ▶ 「개식용종식특별법」 제정으로 개 식용 종식 이행
- ▶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으로 관리의무 강화

- ▶ 정책 홍보, 현장 모니터링 등 민관협력 확대
- ▶ 중·고등학교까지 학교교육 확대
- ▶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
- ▶ 업계 이행상황 철저 점검으로 27.2월 개 식용 소비 종식
- ▶ 중성화수술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사육허가제 안착

04 영업·의료·연관산업



영업관리



동물의료



연관산업

- ▶ 영업별 준수사항 세부기준 마련 및 점검
- ▶ 동물병원의 종류·기능에 대한 규정 부재
- ▶ 별도 육성 체계 미흡

- ▶ 관리기준 상향 및 갱신제 도입으로 영업장 동물의 복지개선, 위반 시 처벌 강화
- ▶ 전문의제도 도입 등 의료체계 개선 및 종합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육성
- ▶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 및 펫푸드 영양표준, 표시기준 등 제도 기반 마련